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74

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조인철・박수현・주철현

이건태 • 이해민 • 한정애

박용갑 • 이개호 • 김문수

정진욱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.

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.3.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.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, 미국, 캐나다,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 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,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삭제 및 제34조제6항 신설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8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둔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 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

"대통령경호처"를 인용한 경우에는 "경찰청"을, "대통령경호처장"을 인용한 경우에는 "경찰청장"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대통령경호처) ① 대통령	<u>&lt;</u> 삭 제>
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	
대통령경호처를 둔다.	
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	
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	
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·직무	
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	
따로 법률로 정한다.	
제34조(행정안전부) ① ~ ⑤ (생	제34조(행정안전부) ① ~ ⑤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사
	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
	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둔다.
<u>⑥</u> ~ <u>⑧</u> (생 략)	<u>⑦</u> ~ <u>⑨</u> (현행 제6항 ~ 제8
	항과 같음)